

제 1435 호
1989. 5.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고
편집인 : 공보관 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훈시형
물품관리권환소요조치 4

◎ 조 례
제 2443 호 : 서울특별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2444 호 : 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 8
제 2445 호 :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 10
제 2446 호 :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 11

규 칙
제 2285 호 : 서울특별시광교동동주민자치회규칙중개정규칙 13

이런저런

단										
말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㉔	고 시	
	제 211 호 : 지역별연탄공급구역지정	18
	제 218 호 : 도시계획사업 (시설축지) 실시계획인가	19
	제 219 호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20

㉕	공 고	
	제 359 호 : K·S 표시허가취소	21
	제 36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안공고	21
	제 36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22
	제 363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	23
	제 365 호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24
	제 366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및영업정지	38
	제 369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	38
	제 378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	39
	제 381 호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회제직공무원지정	39
	제 382 호 :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	40
	제 383 호 : 2 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	40
	제 395 호 : 명동구역 제 5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	40
	제 398 호 : 주택건설 (임대주택) 사업 자영업정지 처분해제	41

㉖	구 고 시	
	제 3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	42
	제 6 호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44
	제 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4
	제 1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45
	제 16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45
	제 2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46
	제 32 호 : 민영주택건설입주자모집공고승인	46
	제 4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47

㉗	구 공 고	
	제 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47
	제 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48

제 2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2
제 3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2
제 3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3
제 3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3
제 3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4
제 43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4
제 64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5
제 6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5
제 6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56
제 77 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56
제 7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공람	57
◎ 사업소고시	
제 7 호 : 하천계속점용허가	58
제 9 호 : 선박운항허가고시	58
제 10 호 : 선박운항허가고시	59
◎ 사 령	
◎ 공 치 사 항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78

공 문 시 행

총무 01750-277

(6615)

수 신 : 홍보제회 담당관

계 목 : 불용물품관리 전후소요 조희

1. 우리과 소관 물품중 별첨 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 조희
합니다.

가. 관리전환 : 소요조희 물품명세서 1부 (별첨)

나. 조희기관 : 각 구청 및 산하전사업소

다. '89년 5월 30일 까지 소요요청이 없을때는 소요가 없게
으로 간주함.

첨 부 : 소요조희 물품명세서 1부. 끝.

총 무 과 장

○ 소요조회 부품명세서 (S/T 교환기 부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상 태	비 고	
AB 제전기앗셈	2 S 용	개	30	신 품		
와이파	3 레벨	"	187	"		
콘덴서	1 - CH	"	27	"		
램프캠	1 - A	"	30	"		
"	1 - B	"	28	"		
램 프	3 - Y	"	280	"		
제전기앗셈	RT-96	"	10	"		
"	RT-124	"	29	"		
아마쉬 붓싱		"	70	"		
R 제전기	TT-14	"	27	"		
S "	TT-60	"	30	"		
저 항	63-TC	"	15	"		
A 제전기코일	200 + 200	"	60	"		
"	200 + 200 + 480	"	56	"		
B 제전기코일	222-AS	"	22	"		
스프링앗셈	222-AS	"	25	"		
C 제전기코일	221-TAS	"	14	"		
C 제전기앗셈	221-TAS	"	30	"		
D 제전기코일	222-TEJ	"	28	"		
D 제전기스프링앗셈	222-TEJ	"	24	"		
E 제전기코일	222-TL	"	24	"		
E 제전기스프링앗셈	221-TL	"	2	"		
스위치플러앗셈	16PT	"	29	"		
마블록	T1139-1	"	91	"		
스태쇼날록	T1144	"	122	"		
버터잘아마쉬	T1054 A	"	22	"		
마블록스프링	T1142	"	46	"		
샤후트스프링	T1314	"	69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상 태	비 고
배 아링핀	T1139-2	개	30	선 품	
"	T1054-A	"	18	"	
로타리아마취	T1073A	"	27	"	
크램프	T1316	"	25	"	
하부크램프	T1083B	"	20	"	
상부크램프	T1083B	"	15	"	
래리스링크	T1118	"	30	"	
캠스트링 및 브란켓 앳셈	T1134A	"	27	"	
로타리 인터럽터 스트링	T1130A	"	30	"	
래리스아마취	T1108C	"	27	"	
제전기 (TT-14)	324114	"	29	"	
" (TT-128)	324114	"	30	"	
63 저항	63-G	"	15	"	
"	63-TC	"	15	"	
휴 즈	3A	"	140	"	
B 제전기	22-AS	"	27	"	
C 제전기	221-TDK	"	4	"	
D 제전기	222-TFE	"	24	"	
E 제전기	221-TFE	"	23	"	
J 제전기 코일	200 + 200	"	28	"	
콘덴서	MD2+2	"	16	"	
정류기	SDR-3	"	4	"	
A 제전기	RT-319	"	26	"	
B 제전기	RT-25	"	22	"	
FA 제전기	RT-382	"	25	"	
S 제전기	RT-130	"	25	"	
램 프	1-A	"	141	"	
DFP.FTT.RTT 제전기	222-TRL	"	10	"	
FA RA 제전기	222-TRJ	"	8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상 태	비 고
GO.SPF.FGF 제전기	222-TRF	개	10	신 품	
GO2 제전기	222-TAR	"	10	"	
RH.IRF.CRH.CRF 제전기	222-DFY	"	10	"	
DIF.BTE.RBIF 제전기	222-THC	"	10	"	
유도선통	1-D	"	15	"	
저 항	T63-CN	"	15	"	
"	T63-CS	"	15	"	
콘덴서	50-B	"	15	"	
저 항	63-TC	"	15	"	
저항램프	10-RE	"	75	"	
키론주장치	KJ-1030	대	34	중 고	
키론전화기	"	"	497	"	
증설벨	10 회로	"	34	"	
보류음송출장치	"	"	34	"	
전화기	70형	"	410	"	
"	채신 1호	"	99	노 후	
믹 서	30 채널	"	1	"	

c. 소요조회 물품명세서 (70형 전화기부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상 태	비 고
반 달	70형용	개	64	신 품	
D-코드	채신 1호용	"	100	"	
"	70형용	"	90	"	
S-코드	"	"	150	"	
프레스트	교환용	"	5	"	
송화유니트	채신 1호	"	2	"	
수화유니트	"	"	7	"	
송화유니트	70형	"	100	"	
수화유니트	"	"	80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시장 고건 **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훈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443 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민학교(복부)중 "60 서울화계국민학교"란 다음에 "51 서울상원국민학교 노원구 상계동 979-2"란과 "62 서울상천국민학교 노원구 상계동 704-21"란을, 국민학교(강남)중 "40 서울양정국민학교 강남구 개포동 77-1"란 다음에 "41 서울영희국민학교 강남구 일원동 617"란을 각각 신설하고, 국민학교(중부)중

"17 서울영희국민학교 중구 인현동 2가3"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444 호

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에 수상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상이용시설"이라 함은 자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1. 보트, 요트, 돛단배 기타 선박류
2. 동력보트와 수상스키 장비
3. 선박계류장
4. 인명구조선
5. 기타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6. 제 1호내지 제 5호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장비

제 3 조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는 한강에 시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이용시설을 설치한다.

제 4 조 (위탁운영) ①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상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의 진흥 또는 사회체육의 지도및 유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조금) 시장은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수탁자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 6 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상이용시설을 위탁받은 목적외의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수상이용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수상이용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 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이용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 6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수상이용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된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 9 조 (권한의 위임) 제 4 조,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에는 동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고건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445 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구분 운영) 기금은 적립제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제과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 3 조 (기금의 조성) ①적립제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자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

3.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주민 및 기관·단체의 출연금
5. 기타 수입금

②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자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공여된 주민등의 지원금 및 출연금
3. 기타 수입금등

③서울특별시는 제 1항제 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 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 세출외의 현금구좌로서 설치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 제과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②적립제정은 서울특별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 5 조 (기금의 운용) ①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자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문학·미술·음악·연예 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⑩차립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의 적립비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6 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서울특별시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의 사용은 용도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기금의 재단 출연) 서울특별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또는 운영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서울특별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당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문화계장으로 한다.

제 9 조 (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세입 세출의 현금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446 호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

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p>조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도 사용료,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지하철 운임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쓰레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료 8. 주차요금 9. 기타 시장이 시민생활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및 수수료 <p>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자문위원 2인 2. 공기업분야 교수 1인 3. 언론기관 간부 1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소비자보호단체 법의회 간부 1인 5. 대한상공회의소 간부 1인 6. 공인회계사 1인 <p>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7 조 (회의록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지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 8 조 (감사) ①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둔다.</p>
--	--

2) 간사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 9 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등)

1)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 2 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 10 조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광고물통관리법시행규칙 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고건환

◎서울특별시규칙제 2285 호

서울특별시광고물통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고물통관리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의 2 를 삭제한다.

제 2 조의 3 제 3 항 제 3 호 및 제 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비: 차량 - 1톤이상 화물차 2대, 승용차 1대

이륜차 또는 자전거 - 5대 이상

전화 - 3대 이상

4. 관리인원: 20 인 이상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고물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 1 항 제 3 호의 구비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7일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돌출

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이용간판, 형광류 및, 벽면류광고물, 주유소물사인, 고속도로변, 휴게소내 광고물의

경우에는 현제 9 호 서식외 의한 광고물의 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 단서중 "공

<p>업지역, 준공업지역안 및"을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과"로 한다.</p> <p>제 15 조의 2 제 3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이 규칙에 의한 각종 구역의 지정 및 미관에 관한 사항 [별표 3]의 설치방법란 제 1 호중 "1층이상"을 "2층이상"으로한다. [별표 12]를 별기와 같이 한다. [별표 13]를 삭제한다. [별지 제 7 호서식] 및 [별지 제 11 호서식]을 삭제한다.</p> <p>규칙 제 2092 호 서울특별시 광고물통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부칙 제 1 항중 "시행하되 제 2 조의 2 울림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1988.</p> <p>[별표 12] 옥상광고물(옥상배은, 광고합동 포함)</p>	<p>12.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시행한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기존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설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광고물중 이 규칙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	---

규 칙	적 용 대	설 치 방 법	적용기간
1. 옥상배은의 설치위치	1. 옥상배은의 적	1. 설치가능지역등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다만,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주거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고내용 및 규격 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 2년이내
2. 광고물의 높이는 건물 높이의 1/3 이하	색류원광 표시은 배은간판 면적 1/2 초과금지	나. 역, 공항, 항만, 터미널(고속 및 시외버스)의 건물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규격	색채	설치방법	건물고도 가치 기준
<p>다만, 공업지역은 6m이하</p> <p>3. 최대규격은 가로 20mx 세로 15mx 높이 15m이하</p>		<p>중심으로 부터 일정범위를 정하여 고시한 지역</p> <p>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외국인을 위한 특정 소행지역등 지역의 개발상 투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p> <p>라. 1개건물에는 1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상업지역내의 광고물 상호간의 자리는 50m를 유지하여야 한다.(기 설치분 예외)</p> <p>다만, 자기건물에 자기프사가 입주한 경우에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상호 또는 자기유희를 표시하는 광고물은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마. 옥조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p> <p>2. 설치장소별 광고내용</p> <p>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 공장 옥상 또는 기업체 본사 건물옥상에는 기간제명, 공장안내, 자사제품에 한하여 업종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p> <p>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외의 건물외서는 자사제품의 상업광고도 할 수 있다.</p> <p>3. 층별 설치 가능건물(다만, 공업, 준공업지역은 적용 제외)</p> <p>가. 5층건물</p> <p>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7m이하로 한다.(건물앞면의 중상지면 기준)</p> <p>다. 건축물의 계단실, 승강기탑, 전망탑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의 상단에 설치</p>	

규격	의제	실치방법	허가설치방법
		<p>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옥상 구조물의 높이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높이에 산입한다.</p> <p>4. 옥상광고물의 설치</p> <p>가. 옥상광고물의 구조물은 등록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상에 설치하는 옥상광고물의 구조물은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야 한다.</p> <p>나. 옥상광고물의 풍하중은 건축물의 구조물에 관한 규칙(건설부령)에 의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증소지자가 하여야 한다.</p> <p>5. 광고물의 형태</p> <p>가. 옥상광고물의 형태는 건축물의 형태, 규모, 입지등을 참작하여 사각형, 삼각형, 원통형등 도시미관과 안전에 적합한 형태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도로변에 면한 옥상전면 외측과 나란하게 하여야 한다.</p> <p>6. 기타 허가조건 부여</p> <p>가. 광고물의 뒷면 및 옆면등 광고제시외의 물건에는 페인트 기타 방법에 의하여 미관을 갖추어야 한다.</p> <p>나. 파손, 부식, 노후등으로 인하여 공중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때는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p> <p>다. 오염, 변색되거나 광고물의 일부가 떨어질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 항상 미관을 보존하여야 한다.</p>	

규격	색채	설치방법	최고설치높이
		<p>다. 허가기준일로 부터 매 1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배운(전광)광고물에 대하여는 전기공사면허업자 또는 이와 동등역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하여야 한다.</p> <p>7. 옥상배운(전광)광고물의 설치방법등</p> <p>가. 옥상배운(전광)광고물의 설치방법은 일반 옥상광고물과 같다. 다만, 시장, 구청장은 고속도로 또는 주거지역과 밀접하여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도시계획상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등 도시의 기능상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p> <p>나. 설치자는 전기공사법 제 의한 면허를 취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p> <p>다. 선호등 부근 50m전후 좌우에는 점멸등 및 선호등과 같은 배운(적, 황, 녹색)을 사용할 수 없다.</p> <p>라. 점멸등(소형조명기구) 상업용 전자식전광판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지역(외로기관,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안내구역)에 한하여 상업용</p>	

<p>공 공 공</p>	<p>역 역 역</p>	<p>설 설 설</p>	<p>방 방 방</p>	<p>법 법 법</p>	<p>가 가 가</p>	<p>신 신 신</p>	<p>고 고 고</p>	<p>및 및 및</p>	<p>간 간 간</p>
<p>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 마. 청소년전도 유희업소(디스코텍, 삼야다방 등)의 자극적이고, 현색적(적색광)색상 표시를 금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고 시</p> <p>◎서울특별시고시제 21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별연탄공급구역지정</p> <p>1989. 5. 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적용대상: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 17 조의 별표 3 에 의한 ; 초전반 2. 공급구역별 공급지역</p>									
<p>시, 도, 군</p>	<p>공공구역명</p>	<p>공공소재지</p>	<p style="text-align: center;">공 공 공</p> <p style="text-align: center;">급 급 급</p> <p style="text-align: center;">지 지 지</p> <p style="text-align: center;">역 역 역</p>						
<p>서울특별시</p>	<p>서울특별시</p>	<p>서울특별시</p>	<p>○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북구 계양동</p> <p>○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미금시, 의정부시 장곡동, 호원동, 포천군, 남양주군, 가평군, 양평군,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파주군, 고양군, 강화군, 김포군</p> <p>○ 강원도 철원군</p>						

시·도별	공급구역명	공장소재지	공 급 구 역
			<p>○ 다만, 서울특별시는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의 인천, 수원구역과 경기도의 의정부구역에서도 공급할 수 있으며, 인천직할시 북구 지역동 및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파천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이천군, 강화군과 김포군은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의 인천·수원구역에서, 여주군은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의 인천·수원구역과 강원도의 춘천·원주구역에서, 구리시, 의정부시, 장목동, 호원동, 포천군, 남양주군, 가평군, 양주군, 파주군과 고양군은 경기도의 의정부구역에서,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도의 의정부구역과 강원도의 춘천·원주구역에서도 각각 공급할 수 있다.</p>
<p>— 부 칙 —</p> <p>1. (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2. 본 고시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 제606호(’83.9.16) 일탈채임공급구역 지정 고시를 폐지한다.</p>			<p>3. 관제도시는 종합건설본부 및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5. 10 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시행과치: 강서구 반화동 106번지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 명칭: 안양천 하수처리장 시설 녹지 조성공사 <p>다. 사업의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면적 45,000㎡
<p>◎서울특별시고시제 218 호</p> <p>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3 호(89.2.21)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종합건설본부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93.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서: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첨부: 수용하여야 할 토지 세부조서 1부

◎서울특별시고시제 219 호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1)에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제1동 일대 및 서빙고동 일대의 서빙고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5. .
서울특별시장

1. 개발계획의 명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2. 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제1동 일대 및 서빙고동일대
나. 면적: 2,110,000㎡
3. 개발계획 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계	814,000	100	814,000	100	변경없음
주대용지	645,088.3	79.25	642,639.3	78.95	2,449.0㎡감소
지구중심	8,486.3	1.04	8,486.3	1.04	변경없음
주구중심	26,644.6	3.27	29,093.6	3.57	2,449.0㎡증가
분구중심	1,641.0	0.2	1,641.0	0.2	변경없음
학교용지	42,363.3	5.2	42,363.3	5.20	·
공원용지	29,998.5	3.69	2,998.5	3.69	·
도로용지	59,778.0	7.35	59,778.0	7.35	·

나. 토지이용계획 (지구별)

계	1 주 구	2 주 구	3 주 구	비 고
814,000㎡	352,869㎡	298,112㎡	163,021㎡	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 (제 2 주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주구면적	298,112.0	100	298,112.0	100	변경없음
주구중심	7,754.9	2.6	10,203.9	3.4	2,449.0 ㎡ 증가
주택용지	229,139.9	76.9	226,689.9	76.1	2,449.0 ㎡ 감소
학교용지	42,363.3	14.2	42,363.3	14.2	변경없음
공원용지	1,736.9	0.6	1,736.9	0.6	-
도로용지	17,118.0	5.7	17,118.0	5.7	-

<p>4. 관제도서 비치부서 및 열람방법 가. 도서비치 :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기획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주택과 나. 열 람 : 도서비치 부서에 개별 방문 열람</p> <p>◎서울특별시공고제 359 호</p> <p style="text-align: center;">K·S 표시취가취소</p> <p>공업표준화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한국공업규격 (K·S) 표시취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4. 24. 서울특별시장</p> <p>업체명 : 신진벨보공업(주) 소재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371-8</p>	<p>대표이사 : 박찬건 법정관리인 : 박춘현 허가번호 : 3489 품 명 : KSB 1527 파이프 행거 종류 및 등급 : 엔드형 허가일자 : '84.3.31 취소일자 : '89.4.24 취소사유 : K·S표시중 불법생산</p> <p>◎서울특별시공고제 360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인 공람공고</p> <p>1.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	---

가.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 1989.4.25 ~ 1989.5.9
 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안

1989. 4. 25.
 서울특별시장

순번	구분	등급	유형	폭원 (m)	연장 (m)	기	점	중	점	비	고
1	신설	소로	2	8	390	구로구시흥동 224-1	시흥동 230-1			108	구간 내지
	기경	"	3	6	134	시흥동 224-1	" 228-34				
	변경	"	3	6	26	" 228-38	" "				
2	신설	중로	3	6-9	100	" 424-2	산 71-3				
	기경	대로	1	20-30	370	오류동 120-7	오류동 223-6				
3	변경	중로	3							20	구간 내지
	대로	1	20-30	375							
4	기경	소로	2	8	150	구로동 476	구로동산 60				내지
	변경	"	2	8	150	"	"				
5	신설	중로	3	6	240	공 동 186	공 동 179			70m	구간 내지
	기경	"	3	6	370	" 156-3	" 186				
	변경	"	3	6	300	"	" 176				
	기경	"	3	6	310	"	" 178-3				
	변경	"	3	6	115	"	" 179				

◎서울특별시공고제 362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7 호(77.7.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서
 울시 고시 제 372 호 (77.10.24) 호
 지적승인됨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
 가크저 도시계획법 제 23 조 2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다. 미수령자
 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

<p>3.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동작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p>	<p>나. 공람기간: '89.4. . ~ '89. 5. . 1989. 4. . 서울특별시 장</p>
--	--

- 공 랑 개 요 -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지적승인
신길 1253 ~ 신길 6 동 477	대항로화장공사	B=25 m →B=35 m L=1,500 m 횡수도	서울특별시 시장	'89.1. 가일 ~ '89.12. 31	길고개 137 호 (77. 7. 9)	서고 제372 호 (77.10. 24)

<p>1. 수용 또는 사용토지 건물의 소재, 지목 및 소유권관리명; 생략 2. 토지 또는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생략 3.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p>	<p>제 2 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 규정에 의거 아래의 제 2 종 전기공사업을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89. 4. . 서울특별시 장</p>
---	---

◎서울특별시공고제 363 호

면허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법규	처분사항	처분일
제 252 호	법한기업	한상기	영등포구당산동 1가 55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	영업정지 1월 (89.4.24 ~ 5.23)	89. 4. 24

◎서울특별시 공고 제 365 호

1989. .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산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 7 조 및 제 9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규칙 제 11 조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1. 직인등록 게재현황 : 별첨
 2. 직인등록조서 : 별첨
 3. 직인폐기 게재현황 : 별첨
 4. 직인폐기조서 : 별첨
- ※ 시행일 : '89. 5. 3

직 인 등록 게재 현 황

가. 지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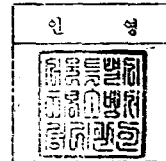
회 계 명	관 서 명	회 계 직 명	직 인 규 격	사용개시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경리관 인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징수관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지출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1.8cm 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활동출납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인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리관인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징수관인	"	

회 계 명	관 서 명	회 계 직 령	직 인 규 격	사용개시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2cm 정방형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지출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1.8cm 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새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인	"	

No

직 인 등 록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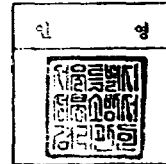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령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리관 인
사용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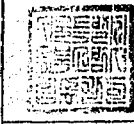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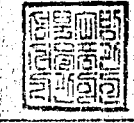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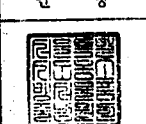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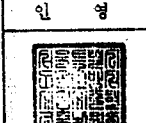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령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경리관 인
사용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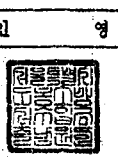
<p>No. <u>직인 등록 조서</u></p> <p>회 제 명 일반회계</p> <p>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p> <p>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징수관 인</p> <p>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인 등록 조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p> <p>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p> <p>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지출원 인</p> <p>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인 등록 조서</u></p> <p>회 제 명 일반회계</p> <p>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p> <p>직 명 성북소방서 물품관리관 인</p> <p>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인 등록 조서</u></p> <p>회 제 명 일반회계</p> <p>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p> <p>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p> <p>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수관 인 사용개시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사용개시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No. <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지출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1. 직인등록 게재현황 가. 지방비				
회계명	관서명	회계직명	직인규격	사용 개시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경리관 인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징수관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지출원 인	"	
	"	성북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1.8cm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출 납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세입세 출의 현금출납원 인	"	
	서울특별시도봉소방서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경리 관 인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징수관 인	"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관 리관 인	"	
	"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지출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1.8cm정방형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물품 출납원 인	"	
	"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세외 세출의 현금출납원 인	"	

<p>No. <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소방소방서 직 명 소방소방서 불암권리관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소방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소방소방서 수입금 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소방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소방소방서 잠정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소방소방서 직 명 소방소방서 책임직출의 전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징수관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지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지출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p>No. <u>직 인 통 록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p>	<p>인 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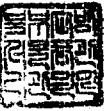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No.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	
사용개시일		

2. 직인폐기 기재현황

가. 지방비

회 계 명	관 서 명	회 계 직 명	직인규격	폐기월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경리관 인	2cm정방형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접수원 인	"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지순원 인	"	
	"	북부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	
	"	일반회계 북부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1.8cm정방형	
	"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인	"	

<p>No. <u>직 인 폐 기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경리관 인 사용</p>	<p>인 영</p> 
<p>No. <u>직 인 폐 기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심수관 인 사용</p>	<p>인 영</p> 
<p>No. <u>직 인 폐 기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지출원 인 사용</p>	<p>인 영</p> 
<p>No. <u>직 인 폐 기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북부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사용</p>	<p>인 영</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폐 기 조 서</u></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폐 기 조 서</u></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생업세출납원 인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폐 기 조 서</u></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2. 직인폐기 제재현황</p>				
<p>가. 지방비</p>				
회계명	관 서 명	회 계 직 명	직 인 규 격	폐 기 월 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경리관 인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징수관 인	2cm정방형	

회계명	관서명	회계직명	직인규격	폐기원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지출원인	2cm정방형	
	"	북부소방서 물품관리관인	"	
	"	일반회계북부소방서 물품출납원인	"	
	"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수입금출납원인	1.8cm정방형	
"	"	서울특별시북부소방서 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인	"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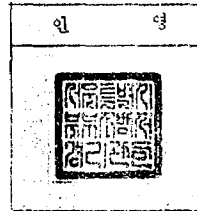
직인 폐기 조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경리관인

사용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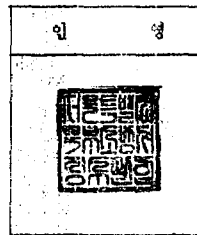
직인 폐기 조서





회계명 일반회계


관서명(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징수관인

사용



<p>No</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패 기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지출원 인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패 기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물품관리관 인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패 기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물품출납원 인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패 기 조 서</u></p> <p>회 계 명 일반회계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수입금출납원 인 사용</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직 인 례 기 조 서</p>		<p>인 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div>																					
<p>회 제 명 일반회제 관 서 명 (국, 청, 소)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직 명 서울특별시 북부소방서 세일제출의 현금 출납원 인사용</p>																							
<p>◎서울특별시공고제 366 호</p> <p>제 2 종전기공사면허시험료및영업정지</p> <p>전기공사법 제 30 조 및 동법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p>		<p>기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실효및 영업정지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4. . 서울특별시 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면허번호</th> <th style="width: 10%;">상 호</th> <th style="width: 10%;">대표자</th> <th style="width: 10%;">소 재 지</th> <th style="width: 10%;">위 반 내 용</th> <th style="width: 10%;">처 분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제 375 호</td> <td style="padding: 2px;">성지전기공사</td> <td style="padding: 2px;">전우생</td> <td style="padding: 2px;">강동구천호동 307-3</td> <td style="padding: 2px;">공사면허지신고</td> <td style="padding: 2px;">전기공사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공사업 면 허 취소</td> </tr> <tr> <td style="padding: 2px;">제 1035 호</td> <td style="padding: 2px;">동아전기 건설공사</td> <td style="padding: 2px;">이광재</td> <td style="padding: 2px;">강동구천호동 210-6 호</td> <td style="padding: 2px;">전기공사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33 조 1 항위반</td> <td style="padding: 2px;">전기공사법 제 29 조 제 2 항 3 호에 의거 영업 정지 1월 (89.4-89.5) 29.30</td> </tr> </tbody> </table>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제 375 호	성지전기공사	전우생	강동구천호동 307-3	공사면허지신고	전기공사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공사업 면 허 취소	제 1035 호	동아전기 건설공사	이광재	강동구천호동 210-6 호	전기공사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33 조 1 항위반	전기공사법 제 29 조 제 2 항 3 호에 의거 영업 정지 1월 (89.4-89.5) 29.30	<p>◎서울특별시공고제 369 호</p> <p>제 2 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p> <p>전기공사법 제 29 조제 2 항 제 3 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 . 서울특별시 장</p>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제 375 호	성지전기공사	전우생	강동구천호동 307-3	공사면허지신고	전기공사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공사업 면 허 취소																		
제 1035 호	동아전기 건설공사	이광재	강동구천호동 210-6 호	전기공사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33 조 1 항위반	전기공사법 제 29 조 제 2 항 3 호에 의거 영업 정지 1월 (89.4-89.5) 29.30																		

- 단 -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항	처분사유
727	대명전기공사	구로구구로동 (2부락 10호)	유근익	영업정지 1개월 (89.4.18-5.18)	2년실적미보고
736	서진전철	독산2동 1038-23	이희영	영업정지 2개월 (89.4.18-6.18)	3년실적미보고
<p>◎서울특별시공고제 378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처분</p> <p>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던가 동법</p>				<p>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p> <p>1989. 5.</p> <p>서울특별시장</p>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234	수극동무공	중구정동 1-11	정진생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3 호	영업정지 2월 89.5.2-6.31
<p>◎서울특별시공고제 381 호</p> <p>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장공무원지정공고</p> <p>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 (1980.1.25)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85 호) 에 의거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회계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p>				<p>다 음</p> <p>회계직 공무원 지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 면역관 · 산업경제국장 ·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 공무원 · 상공과장 <p>서울특별시장</p>	
<p>직 인 통 록 조 직</p>					
<p>회제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p> <p>관서명 (청소) : 산업경제국 상공과</p> <p>직 명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출납공무원</p> <p>사용제시일 : 1989</p>				<p>인 영</p> 	

<p>◎서울특별시공고제 382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p> <p>제 31 조 1 항 규정에 의거 아래업계의</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5. .</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강</p>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처분내용	사 유
1019	대광건설전기	개포동 504	김 영 재	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3 항 마달
<p>◎서울특별시공고제 383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공고</p> <p>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3 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p> <p style="text-align: center;">아 래</p>		<p>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강</p>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사 유
제 1141 호	국화기업사	권 국 황	강남구논현동10-10	영업정지 1월 89.5.3-89.6.2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3 호
<p>◎서울특별시공고제 395 호</p> <p>영동구역 제 5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 <p>1. 건설부 고시 제 317 호 (83.9.30) 로</p>		<p>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234 호 (84.4.27) 로 사업계획 결정된 영동구역 제 5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 소유자인 신영증권주 대표 박병열로 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4 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법 제 12 조</p>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는바, 동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제서류를 공고일로 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9. 5. 9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개요

- 1) 재개발사업의 명칭: 명동구역 제 5 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중구을지로 2가 168-2의 8필지)
- 3) 시행면적: 1,789.8㎡
- 4) 시행자: 신영증권(주) 대표 박병달
- 5)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번지
- 6) 시행기간: 인가일로 부터 3년
- 7) 건축개요
 - 대지면적: 1,325㎡
 - 건폐율: 45.86% (건축면적: 607.6㎡)

- 목적율: 490.97% (역면적: 11,452.1㎡)
- 층 수: 지상 12층, 지하 5층
- 주용도: 업무 (부속: 판매)
- 8) 공람기간: '89.5.9-'89.6.8
- 9)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 공람 장소에 비치한 계획서 및 규약
- 10)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 398 호

주택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영업정지 처분해제 공고

다음 주택건설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 2 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 ('89.4.4-'5.3)한 업체로서, 동처분 기간이 만료되어 동처분용 '89.3.4 자로 해제하였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에 의거 공고합니다.

1989. 5.

서울특별시장

주택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영업정지 해제 대상업체 명단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영업정지기간	해제일자	비 고
1	88-157	우도건설(주)	박영규	방배동 1023-1	'89.4.4-5.3 (1개월)	'89.5.4	
2	88-167	취두전공영	박두상	방배동 1023-1	"	"	
3	88-169	주명산종합개발	민예식	잠원동 27-8	"	"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영업정지기간	해제일자	비 고
1	88-171	위상미전설	곽정자	서초동1603-68	89.4.4-5.3 (1개월)	89.5.4	
5	88-187	주신동업건설	홍성신	서초동1337-17	"	"	
6	88-365	신주중전설주	김용범	서초 1579-9	"	"	
7	88-201	경림주해건설 (개인)	조광득	서초 1303-10	"	"	임대주택
8	88-202	주동년산업	손문익	김상용	"	"	
			박영옥	내곡동산 12-2	"	"	

구 고 시

◎중구고시제 3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39 호(88.1.23) 및 제 83 호(88.2.8)로 도시계획사업(도로)인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시합니다.
2. 같은 도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와, 전설라리과에 비리하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건물조사

- 가. 사업시행위치: 중구중무로 5 가 55
번지 - 84 번지간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명칭: 중무로 5 가 55 번지 -
84 번지간 도로확장공사
- 다. 사업규모: 폭 15 m, 면장 116 m
- 라. 사업의 시행자: 중구청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인가일로부터 1988.
12.31 까지
 - 준공: 인가일로부터 1989.
12.31 까지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세목조사: 야대
- * 아래: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작성 생략)

소재지 지번	구 조	용 도	지축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관 재 인	주 소 성 명	
중무로 5 가 78-8	분 렷 스레트	검교및 주 택	127.8	중무 5 가 78-5	일직제 외 1 인	소유권분쟁 (소송중)

소재지지번	구 조	용 도	지 축 면적 (㎡)	소유자및관계인주소성명		비 고
				주 소	성 명	
충무로5가 84-3	목조기와 스타브	점포및 주택	87	용산구보광동 256-811	강 효 성	협의보상 완료
충무로5가 85-3	목조기와	"	94.7	충무로5가85	한 영 신	"
충무로5가 85-5	"	"	74.8	마포구서교동 195-186	정 준 길	"
충무로5가 85-6	"	"	44.2	구로구독산동 1047-12	오 금 채	"

○ 토지조사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및관계인주소성명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주 소	성 명	
충무로5가55-9	도로	13		국	협의보상완료
" 55-17	대지	1		삼건전서	"
" 55-18	"	2.7		"	"
" 78-6	"	34.7	충무5가78-1	강영수	"
" 78-7	"	5		국	
" 78-8	"	67.2	충무5가78-5	임적재의100	"
" 79-9	"	298.3	강남압구정동현대아파트 113동 605호	정윤숙	"
" 84-3	"	59.5	용산구보광동 256-811	강효성	"
" 84-4	"	121	필동2가87-2	선우숙	"
" 85-3	"	53.6	충무5가85	한영신	"
" 85-5	"	60.7	마포구서교동 195-186	정준길	"
" 85-6	"	33.4	구로구독산동 1047-12	오금채	"
" 79-6	도로	20.8		국	

◎용산구 고시제 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 1. 건설부고시제 560 호(63.9.19) 호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된 이태원 446-187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하였으므로 동법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에 의거 이물 고시합니다.
-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4.
용 산 구 청 장

○ 인가개요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용산구이태원 동 446-187 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태원 동 446-187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B= 6 ~ 8 m
L = 240 m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90.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한토지 및 건물
조서 : 별첨
사. 사용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참조

◎양천구 고시제 8 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4.21
양 천 구 청 장

다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 한전강서주택조합 조합장 안 정 희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7-32 의 9 필지
○면 적 : 6,198㎡
○규 모 : 아파트 15 층 2 동 156 세대
- 4. 사업시행기간 : '89.4-'90.6

5.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	점	비고
기정	소로	2	8 m	110 m	신정동 86-20	신정동 86-20	
변경	"	2	8 m	110 m	"	"	색 지

<p>◎서대문구고시제 11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p> <p>1. 서대문구공고 제 62 호 (89.3.18)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공람공고한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조례 제 2126 호 (86.12.18) 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4. 22 서대문구청장</p> <p>* 허가내용</p> <p>가. 사업시행자: 서대문구 연희동 55-1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서울외국인학교 교사숙소 증축</p> <p>다.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면적: 54,800㎡</p>	<p>건물 연면적 기존 23,258㎡ 금회 399.81㎡ 계 23,657.81㎡</p> <p>라.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 연희동 55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단 대표이사 고 일 신</p> <p>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1989.4</p> <p>바. 사업의 준공예정일: 1989.10.31</p> <p>사. 수용할 토지: 없음</p> <p>아. 허가조서: 별첨 (생략)</p> <p>◎동작구고시제 1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p> <p>1.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73-2 회 1 필지상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3 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4. 29 동작구청장</p> <p>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p> <p>2. 사업주체: 유천건설(주) 대표 김성복</p>
--	---

3. 사업시행지 및 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3 의 2, 472 의 2

나. 면적 및 규모

주택종별	구 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사 업 비
	층	동	세대				
연립주택	3	2	30	1,545.44	613.54	2,382.96	1,292,735천원

다. 변경사항: 전월내부(식당 및 주방과 침실) 위치변경 및 계단실 입면변경

라. 도 면: 생략

4. 사업기간: '88.10.10-'89.11.25

◎종로구고시제 2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4

종로구청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서부건설 임민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서울시종로구구기동 51-7번지의 6필지

나. 대지면적: 2,500.45㎡

다. 건축연면적: 2,548.5㎡

라. 규모: 연립주택 3층 2동 18세대

4. 사업시행기간: 1989.4-1989.12

◎중랑구고시제 3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8번지 2호의 1필지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 4

중랑구청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이주자 모집공고 승인

2. 사업주체: 주식회사 자양주택 이충호외 1인

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
가. 위치: 중랑구 중화동 18번지 2호의 1필지

나. 대지면적: 2,267.94㎡

다. 규모: 연립주택 3층 3동 67세대

4. 사업기간: 1988.6-1989.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43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9호(89. 4. 4)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89-1 일대 난우국민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의거 아래와같이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급한다.

1989. 4. .

관 악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사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번	정	학	교		관	악	구	신	림	동
							589-1	일	대	
							11,284	㎡		난우국민학교

나. 도면: 관악구청 비치도면과 같음. (도면 생략)

구 공 고

◎ 성북구 공고 제 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421호(79.9.28)로 시설결정및 지적승인된 종암동 78-83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요자 도시계획법 제 1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제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승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같음 합니다.

3. 관제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의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급한다.
-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 5. .

성 북 구 청 장

- 1) 사업시행지: 종암동 78-83 간
-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종암동 78-83 간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B=8m, L=420m 도로개설
- 4)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인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 준공: 91. 12. 31</p> <p>6)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p> <p>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p> <p>8)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되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p>	<p>이공고로 갈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5. 11. 성 북 구 청 장</p> <p style="text-align: center;">- 공 랑 개 요 -</p> <p>1) 사업시행지: 잠룡동 966 외 155 ~ 506 외 150</p> <p>2) 사업종류및명칭: 정통전입로 확장공사</p> <p>3) 사업회규모: 도로확장 B=6-10m L=600 m</p> <p>4)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p> <p>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89. 4. 91. 12. 31</p> <p>6)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p> <p>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p> <p>8) 기타사항: 의견 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되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p>
<p>◎ 성북구공고제 2 호</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시 고시 제 24 호 (76.9.24)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 고시 제 565 호 (86.8.7) 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되어 서울시 고시 제 612 호 (86.8.23) 로 지적고시된 정통전입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p> <p>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문지 같거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p>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의의 관리명세
						소재지	성명	
1	정릉동 966-162	대	41㎡	41㎡		정릉동 485-2	유두인	
2	" 966-163	"	54㎡	54㎡		" 106	김태호	
3	" 966-164	"	57㎡	57㎡		" 139	김애자	
4	" 966-165	"	31㎡	31㎡			(국)	
5	" 490-2	"	4㎡	4㎡		정릉동 490	이상언	
6	" 491-5	"	26㎡	26㎡		" 491-1	채현국	
7	" 492-8	"	12㎡	12㎡		" 492-5	강연환	
8	" 506-146	"	16㎡	16㎡		종로구관철동 19-19	김수동 문화채 관리국	
9	" 506-147	도로	27㎡	27㎡				
10	" 517-4	대	1㎡	1㎡		관악구봉천동 1543-12	윤진업	
11	" 986-3	도	10㎡	10㎡			(국)	
12	" 986-4	"	5㎡	5㎡			(국)	
13	" 509-1	대	47㎡	47㎡		정릉동 512	이충국	
14	" 520-1	"	8㎡	8㎡		강원 삼척군장상읍 장성리69-5	권계송	
15	" 521-1	"	12㎡	12㎡		강서구화곡동 1027-40	성일운	
16	" 522-1	"	13㎡	13㎡		정릉동 522	심형기	
17	" 581-4	도	4㎡	4㎡			서울시	
18	" 506-149	임	249㎡	249㎡		종로구사직동 181-3	노상만	
19	" 506-150	"	216㎡	216㎡		돈암동 606-422	유중원 외 8인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구격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
						관계자주소성명	의권리명세
1	정릉동 966-159			41			
2	" 966-155			9			
3	" 966-46	연와구스라브		27	영 업 용	정릉동 485-2 유두열	
4	" 966-56			49			
5	" 966-6	목조세멘기와		53	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	정릉동 139 김애자	
6	" 966-86			38			
7	" 106-2	목조기와		34	주 택	정릉동 106-2 임종원	
8	" 106-3	"		49	"	정릉동 449 김광진	
9	" 106-5			36			
10	" 106-7	목조기와		34	주 택	정릉동 106-7 임해운	
11	" 106-7	"		29	"	" " "	
12	" 483-5			24			
13	" 483-7	목조기와		24	근린생활시설	정릉동 483-7 안영자	
14	" 483-11	목조기와		22		" 483-11 최무열	
15	" 484	목조세멘기와		53	주택·점포	경기 안성 일곡동 415 유천태 축화동리	
16	" 484	"		23	"	" " "	
17	" 485-2	목조기와및시 멘트블록스레트		6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정릉동 434 유두연	
18	" 966-158			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
							관계	주소성명	
19	정릉동	966-158			2				
20		966-158			12				
21	"	966-158			12				
22	"	489-2	목조기와및시 멘블록스라브		13	주 택	정릉동 522	함용선	
23	"	490	목조초급		4	주 택	정릉동 490	전성만	
24	"	491-4			2				
25	"	515-1	연와조기와시 멘블록스라브		5	주택·광	정릉동 515-1	이철상	
26	"	514	목조기와		6	주 택	정릉동 389	장자화	
27	"	523-3			8		미아동산 108	박소자	
28	"	523-3			12				
29	"	523-2			24	주 택 근린생활시설	정릉동 523-2	이철일	
30	"	523-1	시멘블록 시멘블록 연와조기와 기와및시멘 블록스라브		25	주 택	정릉동 253-1	조성재	
31	"	525-1	시멘블록 시멘기와		15	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	길음동 547-55	서연석	
32	"	582-2	시멘블록 시멘기와		10	주 택	정릉동 582-2	최순남	
33	"	583-1	목조초급		3		정릉동 583-1	김봉선	
34	"	584	시멘블록기와		2		830 W END AVE #123 New York Ny 10025	이희건	
35	"	492-7			3				
36	"	523-4	목조기와		12	주 택	미합중국미시간 주윌리엄시북해 리디인가 4357	김영훈	

◎ 구로구공고제 2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
공 략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 호 (74.1.14)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 계획을 인가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 로 구 청 장

—공 사 개 요—

1.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0-66 의 7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개봉동 70-66 의 7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6^M L=100^M 하수도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8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

물 조서 (생 략)

◎ 구로구공고제 3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
공 략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2 호 (73.11.26)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 계획을 인가 하고자 도시 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 로 구 청 장

—공 사 개 요—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385~구로동 685-46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구립고등학교 전 일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10^M, L=150^M 하수도: D=450-600^{mm}, L=290^M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8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생략)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
지 및 건물조서 (생략)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생략)

◎구로구공고제 3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공 략 공 고

◎구로구공고제 3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공 략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69.1.
18)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
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
한 실시 계획을 인가 하고자 도
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1 호 (78.7.
8)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
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
한 실시 계획을 인가 하고자 도
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 로 구 청 장

1989. 4. 26.

구 로 구 청 장

—공 사 개 요—

—공 사 개 요—

1. 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고척동 63-76
간 도로확장 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20^M,
L=30^M, 하수도: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구로
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89. 12. 31.

1. 사업 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3-124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고척동 103-124
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15^M, L=
300^M, 하수도 D=600^{MM}, L=300^M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구로

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89.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및 건물조서
-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생략)

◎구로구공고제 33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공 략 공 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호 (69.1.18)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989. 4. 26,
구 로 구 청 장

—공 사 개 요—

- 1.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49-36~551-175
-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구로6동551-570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8M L=90M 하수도:
-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89.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생략)

◎송파구 공고 제 4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 략 공 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6호 (75.12.1)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도로)의 사업실시 계획인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의 2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 2.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통합니다.
- 가. 공람장소: 송파구청 토목과

(전파 410-3405)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 4. .
송 과 구 청 장

-공 랑 개 요-

1. 사 업 명 : 풍납국고 주변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 풍납동 170의 2-171의 2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8^m, L=80^m
4.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 부터 2년
5.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송과구청장
6. 기 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 바람.

◎은평구공고제 6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69.1.18)로 지적승인된 녹번동 142- 녹번동 146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5. 2.
은 평 구 청 장

-공 랑 개 요-

- 가. 사업명: 녹번동 142- 녹번동 146간 도로개설공사
- 나. 위치: 녹번동 142의 92- 녹번동 146의 2간
-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6^m L=75^m (도로)
- 라.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89. 4 - '90. 12.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표시 별첨 (별첨)

◎은평구공고제 6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6 호 (85.7.15)로 지적승인된 구과앞동 119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5. 8.

은 평 구 청 장

-공 랑 개 요-

가. 사업명 : 구과발동 119 주변 도로개설공사

나. 위치 : 구과발동 113 의 27 = 118 간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 = 4^M, L = 200^M (도로)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89. 4 - '90. 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생략)

◎ 은평구공고제 6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 공 랑 공 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69.1.18)로 지적승인된 불광동 436-3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5. 2.

은 평 구 청 장

-공 랑 개 요-

가. 사업명 : 불광동 436-3 앞 도로개설공사

나. 위치 : 불광동 436-3 앞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 = 6^M, L = 15^M (도로)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89. 4 - '90. 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생략)

◎ 서대문구공고제 77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

-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 7 조 및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아 태와같이 직인등록 및 폐기 신고하고 동규칙 제 11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4. 28.

서 대 문 구 청 장

<p>1. 사용개시일자 : 1989.4.29</p> <p>2. 사용직인 : 서대문구 도로굴착부구 기금 징수관</p>	<p>3. 폐기직인 : 서대문구재개발사업기금 징수관</p> <p>4. 직인등록조서 : 아래</p> <p>5. 직인제기신고서 : 아래</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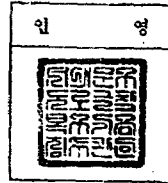
직 인 등 록 조 서

회 제 명 : 도로굴착부구기금

관 서 명 : 서대문구

직 명 : 서대문구 도로굴착부구 기금 징수관

사용개시일 : 1989년 4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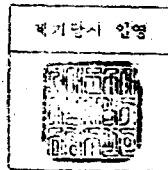
직 인 제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도시재개발사업기금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대문구

직 명 : 서대문구 재개발사업기금 징수관

사용기간 : 1962.12.18부터 1989. 4.28까지



◎ 서대문구공고제 7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1. 우리구 관내 서울의국립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있으나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 5. 3

서대문구청장

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 내용	사업시행자	공 략 기 간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서울외국인 학교 교사 증축	연희동 55-1 일대	교사증축 (기존 3층위 1개층 증축·연면적 1,002.10㎡)	재단법인 서울 외국인학교유지 재단 대표이사 고 일 선	89. 5. 3 ~ 89. 5. 17

사업소 고시

○한강관리사업소 고시제 7 호

하천 계속 점용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계속 점용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9. 4. 17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의 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89. 4.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425 번지선 (한강)	하천	480㎡	유선장 설치	89. 4. 14	서울특별시 성동 구 관각동 189	[주]아리랑보트 대표 김대천
					90. 4. 13		

○한강관리사업소 고시제 9 호

선박운항허가 고시

한강구역내 유선업 영업에 대하여 하
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선

박을 운항허가하고 같은법 제 25 조 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
니다.

1989. 5. 1.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선박운항허가 내용

수 허가자	위 치	목 적	내 용
한강레저산업 대표 김대덕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427-7 번지선한강	유선업경영을 위한 선박운항허가	· 노보트: 20 척 · FRP 페달식보트: 30 척 합계 50 척

수령가자	위 치	목 적	내 용
아리랑보트 주대표 김대천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427-7번지 선한강	유선업경영을 위한 선박운항허가	·노보트: 20척 ·FRP페달식보트: 30척 합계 50척
한강산업 대표 김옥			·노보트: 15척 ·FRP페달식보트: 24척 합계 39척

○허가기간: '89.5.1 ~ '89.10.31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0호
선박운항허가고시

한강구역내 유선업 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 25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운항 허가하고 같은법 제 25

조제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
합니다.

1989. 5. 4

한강관리사업소장

○선박운항허가내용

수령가자	위 치	목 적	내 용
로얄푸른개달 주대표 박 의 철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427-7번지 선한강	유선업경영을 위한 선박운항허가	·노보트: 10척 ·FRP페달식보트: 30척 ·합계 40척

○허가기간: '89.5.4 ~ '89.10.31

사 령

◎ 1989년 4월 18일자 인 사 발령 통 지 령제 150호

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성수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영한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김병환</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안준호</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최동윤</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장석명</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전성수</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신용득</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김경호</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이인구</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유미식</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고홍석</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김양수</p>	<p>총무처 토목기좌시보 토목기좌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신종호</p>
<p>총무처 행정사무관시보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안채경</p>	<p>총무처 토목기좌시보 토목기좌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이상림</p>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김양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고홍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안재경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토목기과 신중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안준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토목기과 이상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장석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기기과 홍순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신용복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건축기과 진희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이인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대 동 령

1989년 4월 24일자 기동근무(노동비상대책본부)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제량	노동비상대책본부 본부장 ('89.4.24 - 별도지시시까지)	보건사회국장	이사관
손광호	" 부분부장	마포구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문자현	"	사회과장	서기관
장정웅	"	사회과노동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서재수	"	관방담당관전통계장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성중	노동비상대책본부 본부장 ('89. 4. 24- 별도지시시까지)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하	"	고용기획과 지하철도계장	"
김홍무	"	법무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육창수	"	사회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희일	"	고용기획과	"

◎ 1989년 4월 21일자 5급이하공무원전보(기구계편) 명계 15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라송주	시정개발담당관 제도개선계장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권희소	법무담당관 송무1계장	법무담당관	"
최동영	보험연금과 직장보험계장	보험연금과	"
배진섭	사회과 직업안전계장	"	"
원배수	"	"	지방행정주사보
이영돈	"	"	"
황성희	"	"	"

◎ 1989년 4월 29일자 기능직공무원전입 명계 15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정철	서울특별시 길일을 명함 서로구 근무를 명함	국가원로자문회의	기능직 기계원 8등급

◎ 1989년 4월 25일자 지방별정직 9급상당공무원신규임용 명계 15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심세숙	지방별정직 9급상당(비서)에 임함 1호봉을 곱함 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규

1989년 4월 26일자 6급이하공무원파견 명제 15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광목	사회과(서울청소년센터건물인수단) 파견('89.4.26-별도지시시까지)	북동외구개발(사)	지방행정주사
윤경수	"	"	지방행정서기
곽현용	"	"	"
권명희	"	도봉구	지방교무원
황종규	"	관악구	지방기계보조원
신현봉	"	종합운동장관리사	"
김명환	"	상복구	지방전기보조원
안덕규	"	송파구	"
이광섭	"	세종문화회관	지방방호원
김한진	"	서초구	지방감시원
유상호	"	상동구	"
전영규	"	상복구	"
이주성	"	은경구	"
심주택	"	종합운동장관리사	지방잡무원
7급공무원파견 명제 15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소영만	사정개발담당과관 파견(사정개발연구원 행정실 요원)('89.4.26-별도지시시까지)	상복구	지방행정주사보
기능직공무원전보 명제 15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병휴	한강관리사업소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기지장(7등급)
박기호	"	"	"
송명수	"	서부위생처리장	지방기제장(6등급)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영실	한강관리사업소	서부위생처리장	지방기계장(6등급)
원기환	"	"	"
이충기	"	"	지방기계장(7등급)
이석만	"	"	지방기계원(8등급)
나민수	"	"	"
김기남	"	"	"
나동선	"	"	지방전기원(8등급)
◎ 1989년 4월 28일자 6급보건직공무원과건			경력 16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손기순	서울지방검찰청 과전 ('89.4.28~'90.4.27)	보건위생과	지방보건기사
◎ 1989년 4월 26일자 기능직공무원면직			경력 16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방태진	원예 의하여 그직을 권장	총무과	지방기계원(8등급)
◎ 1989년 4월 29일자 기능직 8등급이하직공무원특별임용			경력 16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정철	지방기계원(8등급)	시료구	기계원(8등급)
◎ 1989년 4월 27일자 기능직공무원전보			경력 16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봉만	사회과(서울청소년센터근무 요원)	보험연금과(서울청소년 센터근무요원)	지방기계장 (7등급)
모종산	"	"	지방전기원 (8등급)

1989년 5월 1일자 6급기술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및전보				명계 16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신진	'86.7.25자 해임처분을 대법원판결('88누 1943,'89.3.28)에 의거 동일자 취소 은경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토목기사	
1989년 4월 28일자 지방고용직공무원파견및파견해제				명계 16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일구	사회과 (서울청소년센터건설인수단) 파견 ('89.4.28-별도지시시까지)	동대문구	지방기계보조원	
황종규	사회과 파견해제	관악구	"	
1989년 5월 1일자 5급공무원전보(임업직)				명계 16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두환	녹지과녹기보호조계장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목공사와 조경계장	지방임업기과	
권증식	녹지과조경계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식물과장	"	
박경영	기술심사담당관조경심사계장	종합건설본부 공사 5부	"	
박용목	종합건설본부	강서구녹지과장	"	
성현영	"	동대문구녹지과장	"	
이용재	용산구	올림픽토목담당관 조경계장	"	
홍승돈	성동구	성북구공원녹지과장	"	
황이연	동대문구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일근	성북구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 기술담당관	"	
정세영	서대문구	녹지사업소사업과장	"	
이강운	강서구	강동구공원녹지과장	"	
이광욱	동작구	종합건설본부공사 5부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영식	관악구	한강관리사업소 녹지 2계장	지방임업기과
유만수	강남구	성동구공원녹지과장	"
김홍원	강동구	관악구공원녹지과장	"
김수원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서대문구공원녹지과장	"
국응실	녹지사업소사업과장	녹지과녹지보호계장	"
노진학	보라매공원관리사업소 기술담당관	강남구공원녹지과장	"
이춘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녹지과조정계장	"
최광빈	한강관리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 조정심사계장	"
5급공무원 진도(기계, 전기, 보건, 화공직)			명제 16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동오	운수 2과 정비계장 직무대리	올림픽설비담당관 기계계장	지방기계기과
정보희	건축지도과 건축설비계장	목동지구개발사업소 기계계장	"
최명준	종합건설본부	차량정비사업소장	"
이동윤	자동차관리사업소 검사과장	건축지도과 건축설비계장	"
서재석	차량정비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 난지하수처리장	"
이규진	새중문화회관	자동차관리사업소 검사과장	"
김대환	한강관리사업소	운수 2과 정비계장	기계기과
최화형	도도과 기계계장 직무대리	안양하수처리장	지방전기기과
김영웅	수원기전과 수원기전계장	김포수원지사무소장	"
한상열	종합건설본부	올림픽설비담당관 전기계장	"
김부동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전기계장	"
이증호	"	새중문화회관 전기계장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용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영선과장	종합건설본부공사 3부	지방전기과
송용찬	김포수원지사사무장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영선과장	"
정득모	세종문화회관	종합건설본부공사 5부	"
김형동	도봉구	환경과환경 2계장	지방보전기과
김현동	용산구	영등포구 환경과장	"
신동진	환경과환경 2계장	용산구보건소 방역과장	"
장홍수	건설자재사업소 수공시험계장	청소과 위생시설계장	지방화공과
송용기	청소과 위생시설계장	도봉구 환경과장	"
변광훈	한강관리사업소	건설자재시험소 수공시험 계장	"
5급공무원진보(건축직)			명제 16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전희상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신사계장	건축지도과 건축계획계장	지방건축과
손세용	재개발과 재개발사업 2계장	윤필피 건축담당관 계획계장	"
임제호	주택개발과 개량 2계장	윤필피 건축담당관 건축 3계장	"
심관중	건축지도과 건축계획계장	주택개발과 개량 2계장	"
박성수	시험대학교	도봉구 건축과장	"
조성재	동대문구	세종문화회관 시설과 관리계장	"
박희수	종합건설본부	북동개발사업소 건축 공사와 건축 1계장	"
이강규	"	마포구 건축과장	"
진희선	"	내무국	"
박용성	세종문화회관	종합건설본부공사 2부	"
장재우	마포구	시험대학교 시설과장	"
이원훈	도봉구	강동구 건축과장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황의열	내무국 (도시개발공사과전 '89.5. 1-별도지시시까지)	동대문구 건축과장	지방건축기과
권기범	강서구	구로구 건축과장	"
최병인	구로구	강서구 건축과장	"
이석도	영등포구	종합건설본부공사 2부	"
신창선	강남구	기술심사담당관 건축 심사계장	"
이한명	강동구	영등포구 건축과장	"
노상우	내무국 (도시개발공사과전 '89.5. 1-별도지시시까지)	올림픽건축담당관 건축 1 계장	"

5급 공무원 전보 (토목직)

령재 169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장성용	기술심사담당관 토목심사계장	문거발과 지개발계획계장	지방토목기과
여용현	시설계획과 시설계획 1 계장	종합건설본부 한강개발부	"
송득범	" 시설계획 2 계장	노원구 수도공사과장	"
주봉현	도시개발과 택지개발계장	도시개발과 환지계장	"
공성식	재개발과 재개발사업 1 계장	올림픽토목담당관 토목 2 계장	"
노경찬	도시개발과 환지계장	도봉구 도시정비과장	"
김호식	재개발과 재개발계획계장	강남구 토목과장	"
양영규	도로과 도로시설계장	올림픽토목담당관 토목 1 계장	"
조성현	급수과 급수장치계장	구로구 수도공사과장	"
남승운	치수과 치수계장	종합건설본부 한강개발부	"
이연배	종합건설본부	급수과 급수장치계장	"
조근호	"	은평구 도시정비과장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영환	종합건설본부	시설계획과 시설계획2계장	지방토목기과
지명건	"	치수과 치수계장	"
신종호	한강관리사업소	내무국	"
김태준	동부건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마포구 토목과장	토목기과
김분영	서부건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내무국	"
송현설	북부건설사업소장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목공사과장	지방토목기과
이만구	성동구	강남구 수도공사과장	"
김영세	도봉구	성동구 토목과장	토목기과
어운화	노원구	동대문구 수도공사과장	지방토목기과
정병택	구로구	영등포구 토목과장	토목기과
박길동	영등포구	구로구 토목과장	지방토목기과
김광재	"	관악구 도시정비과장	"
유학조	강서구	한강관리사업소 시설과 시설 1계장	"
김진환	마포구	영등포구 도시정비과장	"
전태봉	관악구	동부건설사업소장	"
신삼수	강남구	종합건설본부공사4부	"
이기영	"	서부건설사업소장	"
최백규	구로구	북부건설사업소장	"
이상림	동대문구	내무국	"
5 급 공무원 전보			령제 17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창희	종합민원실 민원 1 반장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이찬호	" 민원 2 반장	조사담당관	"
임동남	공보관 공보계장	공무원교육원	"
동연호	심사분석담당관 심사분석 2 계장	양천구	"
김종환	투자관리담당관 투자심사 1 계장	도봉구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세	직급
전희구	부자관리담당관 부자심사2계장	강동구	지방행정사무관
김태호	시장개발담당관 시정연구계장	중구	"
정희용	" 제도개선계장	중랑구	"
김상범	법무담당관 송무2계장	내무국	"
신수목	문화담당관 문화계장	윤립기획담당관	"
라승주	" 문화과1계장	시장개발담당관	"
박희수	조사담당관 환경순찰계장	윤립기획리담당관	"
박동수	내무국(부시장실)	동각구	"
박충선	시민과 민원2계장	물가지도과	"
김현식	새마을지도과 새마을사업계장	내무국	"
박종걸	회계과 계약계장	회계과	"
최동조	" 회계심사계장	청소과	"
김상규	" 지출계장	사회과	"
박광부	관재과 재산처분1계장	관재과	"
김용구	" 재산처분2계장	윤립기획담당관	"
길은희	" 재산감정계장	판공과	"
오영환	보건과장과 보건행정계장	종합민원실	"
권대걸	사회과 생활보호계장	윤립기획담당관	"
김은초	보험연금과 의료보호계장	서초구	"
박돌봉	상공과 공정계장	마포구	"
김환주	물가지도과 물가1계장	시민과	"
김영호	" 공정거래계장	내무국	행정사무관
정삼문	건설행정과 건설기획계장	"	지방행정사무관
우대영	주택기획과 주택계획계장	주택기획과	"
이상봉	" 용지계장	성북구	"
김연수	주택개발과 개량계획계장	주택기획과	"
오도석	청소과 작업관리2계장	독동지구개발(자)	"
조병희	농지과 농지행정계장	물가지도과	"
김장호	건설생활과 진흥계장	"	"
전귀권	교통기획과 교통운영계장	문화담당관	"
전태산	운수2과 운수과장계장	운수2과	"

성명	발명사항	원부서	직급
박동해	운수 2 과 지도제장	주택기획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춘기	하수과 하수과장제장	한강관리사업소	"
박재상	공업시험소장	관세과	"
김인식	보건환경연구원 서무과장	농지과	"
김홍만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운영과장	건설생활과	"
이재식	서대문병원 서무과장	총로구	"
김상하	자동차관리사업소 관리과장	회계과	"
황병철	" 등록과장	은행구	"
권옥승	" 지소장	하수과	"
이운호	남부군로청소년회관장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장	"
김기창	시립운동장 운영담당관	관세과	"
강병우	공무원교육원	용산구	"
신영기	"	투자관리담당관	"
박영수	"	회계과	"
이경관	내무국 (공무원교육원과장)	시정개발담당관	"
권낙상	공무원교육원과장	내무국	"
이영대	내무국 (공무원교육원과장)	건설행정과	"
박용익	한강관리사업소	용산구	"
윤상수	보험연금과 지역보험제장	강남구	"
조남성	총로구	보험연금과	"
권희모	총 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
차원철	용산구	영등포구	"
최종문	"	관악구	"
임병철	중앙구	시립운동장	"
유시유	도봉구	내무국	"
문열승	마포구	양천구	"
문준호	영등포구	무동지구개발사업소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채승기	서초구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사무관
정현국	"	공업시험소장	"
정광희	강남구	내무국	"
황홍환	"	자동차관리사업소	"
김병준	강동구	관광담당관	"
서병과	"	남부군로청소년회관장	"
김영한	종로구	내무국	"
전성수	용산구	"	"
이신구	"	"	"
안새경	은평구	"	"
안준호	"	"	"
신용복	서대문구	"	"
김병환	양천구	"	"
장석명	"	"	"
김경호	영등포구	"	"
김삼수	삼복구	"	"
김양수	관악구	"	"
최동운	동작구	"	"
유대식	"	"	"
교홍석	송파구	"	"
강신일	내무국	보건환경연구원	"
검 입 근 무			명재17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광부	관재과 국유재산지장 겸임	관재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삼봉	주택기획과 주택관리지장 겸임	주택기획과	"
김환주	불가지도과 물가2계장 겸임	물가지도과	"

인 사 발령 통 지				령 계 172 호
국가원로자문회의 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서기관		내무국 근무를 명함.	이정리	89.4.29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 1989년 5월 2일 9급기술직공무원 파견				령 계 17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오광진	마포구 (난지도산업체기물·단속요원) ('89.5.2-'89.7.31)	구로구	지방보건의원보	
민경일		영등포구		
◎ 1989년 5월 1일 8급지방공무원전출				령 계 174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장우권	강원도 양양군 건설을 명함.	동작구	지방행정서기	
◎ 1989년 4월 1일 지방행정직 9급상당공무원신규임용				령 계 175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이장현	지방행정직 9급상당 공무원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경찰국면허과 근무를 명함.		신	규
◎ 1989년 5월 2일 5급공무원전보및파견해제				령 계 176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김우기	내무국 근무 (국무총리행정조정실 파견 : 89.5.2-90.3.31)	울림역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광태	()	담당관		
김선경	문화담당관 (시립미술관) 파견해제	상공과		
		물가지도과		
◎ 1989년 5월 4일 6급이하공무원파견해제				령 계 177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진석우	한강관리사업소 파견해제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노정수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서성기	한강관리사업소 파견해제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서창기	"	"	"
김기혁	"	"	지방토목기사보
송재룡	"	"	"
이구선	"	"	지방토목기원보
김강호	"	"	"
이상배	"	"	"
이보현	"	"	지방행정주사
김종한	"	"	지방행정주사보
한철록	"	"	지방토목기사보
서보연	"	"	지방타자원

◎1989년 5월 4일 파견 및 겸직 근무 명세 17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명규	지하철건설기획단장 겸직근무	종합건설본부	관리관
이신영	도시개발공사 파견해제 종합건설본부 파견('89.5.4 - 별도지 시시까지) 지하철건설기획단(부단장) 근무	육동지구개발 사업소	지방시설부기장
서무진	한강관리사업소 파견해제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종합건설본부	지방시설기정
조세호	종합건설본부 파견('89.5.4 - 별도지 시시까지)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울림피설비담당관	지방공업기정
이상훈	지하철건설기획단 겸직 근무	수원기전과	공업기정
김영수	"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사무관
백영현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	지방토목기좌
성광일	"	"	지방통신기좌
이중환	종합건설본부 파견('89.5.4 - 별도지 시시까지)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성복구	지방토목기사
최남용	"	울림피설비담당관	지방전기기사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두수	종합건설본부 파견 ('89.5.4 - 별도지 시시까지)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통신기사
김영병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종합건설본부 영등포구	지방기계기사
하동욱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지방전기기사
최항진	종합건설본부 파견 ('89.5.4 - 별도지 시시까지)	목동지구개발 사 업 소	지방토목기사보
	지하철건설기획단 근무		

◎ 1989년 5월 10일 6 급이하기술직공무원전보 명 제 179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인행	건축지도과	올림픽건축담당관	지방건축기사
이병석	종합건설본부	"	지방건축기사보
최성태	기술심사담당관	"	"
최정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기계기사
최완중	노원구	서울대공원관리 사 업 소	"

5 급기술직공무원전보 명 제 18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종호	내무국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통신기좌

◎ 1989년 5월 9일 결임근무해제 명 제 18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계량	가정복지국장 결임근무해제	보건사회국장	이사관

인사발령통지 명 제 182 호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장 서기관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장에 보함. 89.5.9. 대 통 령

◎ 1989년 5월 11일 4 급 공무원 직무대리 령 계 18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경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동물부장 직무대리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지방수의관			
◎ 1989년 5월 10일 지방별정직 8 급 상당 공무원면직 령 계 18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최혁균 이후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진산담당관 마포부너복지관	지방별정직 8 급 상당			
지방별정직 7 급 상당 이하 공무원신규임용 령 계 18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최혁균	진산담당관 (진산처리사) (3호봉)	지방별정직 7 급 상당	신 규			
윤미숙	전자계산소 (진산처리사) (1호봉)	지방별정직 8 급 상당	·			
이석일	· (기계처리사) (1호봉)	지방별정직 8 급 상당	·			
양미영	· (천공원) (1호봉)	지방별정직 9 급 상당	·			
김현진	공무원교육원 (영회기사) (3호봉)	지방별정직 8 급 상당	·			
이후영	마포 (훈련교사) 부너복지관 (1호봉)	지방별정직 7 급 상당	·			
공 무 국 외 여 행 영 령 통 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 간	여 행 경 비	여 행 무 직
소 속	직 명	성 명				
투자관리 담당관	서기관 지방행정 주사	조제호 오승환	일본	89.5.1 - 5.4	사 비	차관조기상환협의

공 무 국 외 여 행 연 령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 간	여 행 경 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명	성 명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연구관	유병태	미 국	89.5.15	계약자	AIDS 검사장비인수 및 기술연수
	보건연구사	최성민		- 5.25	부 담	
가스파	지방 화공기과	황정률	미국, 서독, 네델란드	89.3.21	주최자	해외가스관련산업시찰
	지방 부이사관	반충남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 루	89.5.31	부 담	
공보관	지방 부이사관	반충남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 루	89.5.31	시 비	시출입기자단의 외국도시 행정 비교시찰 및 동행

공 지 사 항				
직 인, 변경 및 신설 내 역				

인 영	부 경 관		변 경 후		신 설
					
공 인 명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 분입경리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 분입지출원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 경리관	서울특별시 남부건설사업소 지출원	남부건설사업소 도로공사복구기금 지출원